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 규정 마련 〉

- 이현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17호)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89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1
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1
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
III . 검토의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 규정 마련	3

I. 제안경위

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가.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4. 8. 23.

다. 회 부 일 : 2024. 8. 26.

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가.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9. 9.

다. 회 부 일 : 2024.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

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이나, 기금의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 규정 마련

☐ 개정안은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기간 종료 후 권리·의무의 국가 승계와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현행	이헌승의원안	유동수의의원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u>운용 기간</u>)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u>기간산업안정기금</u>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u>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u>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u><신 설></u>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u>운용 기간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u>운용 기간 등</u>) ① -----<u>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u>-----<u>기금</u>----- ----- -----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등을 완료하여야

현행	이헌승의원안	유동수의의원안
<u><신 설></u>	<u>은 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u>	<u>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시기·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기업운영의 불안정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재난상황으로부터 야기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극복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2020년 5월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 12월말까지 운용될 예정입니다.

< 기간산업안정기금 개요 >

구 분	내 용
목적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극복하기 위한 기업자금지원
지원대상	국민경제 및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기업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의 대기업·중견기업 등)
재원	●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 기금채권 발행 한도: ('20년) 40조원, ('21년) 40조원, ('22년) 10조원, ('23년) 10조원 ● 회수자금 ● 기금운용수익 등
지원 방식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대출, 자산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의결권은 제한), SPV·펀드를 통한 지원 * 총 8,052억원 지원 - 기간산업 기업 대출·투자: 4,821억원 -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3,231억원
지원 조건	고용안정, 이익 공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기금운용기간	2025년 5월~2025년 12월 31일(부칙)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총 1조 2,300억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을 발행하여, 이 중 1억 20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향후 기금 운용기간 종료 전까지 2,100억원의 채권을 상환하여야 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채권 발행) 내역>

구분	발행금액(만기)	발행일자	만기일	상환액
1차	2,400억원 (3.5년)	'20.10.21	'24. 4.22	2,400억원
2차	1,900억원 (5개월)	'20.11.13	'21. 4.13	차환발행
3차 4차	300억원 (3년) 600억원 (5년)	'20.12.18	'23.12.18 '25.12.18	300억원 -
'20년	5,200억원			
5차	500억원 (6개월)	'21. 1.19	'21. 7.19	차환발행
6차	200억원 (3개월)	'21. 3.24	'21. 6.24	200억원
7차	1,900억원 (6개월)	'21. 4.13	'21.10.13	차환발행
8차	300억원 (6개월)	'21. 6. 1	'21.12. 1	차환발행
9차	500억원 (6개월)	'21. 7.19	'22. 1.19	500억원
10차	1,900억원 (1년3개월)	'21.10. 8	'23. 1. 8	1,900억원
11차	300억원 (2년3개월)	'21.12. 1	'24. 3. 1	300억원
12차 13차	1,200억원 (3년6개월) 300억원 (4년)	'21.12.15	'25. 6.15 '25.12.15	- -
'21년	7,100억원			
전 체	12,300억원 (잔액 2,100억원)	-		

주: '24.10월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 그동안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기간산업기업 등에 총 7,683억원이 지원되었고, 대출상환 등으로 6,699억원이 회수되었으며, 향후 984억원이 추가로 상환되어야 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에 4,821억원이 지원되어 그 중 3,857억원이 회수되었으며, ② 협력업체 프로그램에 2,862억원이 지원되어 부실채권 20억원을 제외한 2,842억원이 회수되었음.

<기산산업안정기금 지원 및 회수 실적('24년 10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기간산업 기업 대출·투자		협력업체 프로그램		합계	
		실행액	회수액	실행액	회수액	실행액	회수액
실적	2020년	3,321	-	1,850	-	5,171	-
	2021년	1,500	-	949	470	2,449	470
	2022년	-	-	63	1,967	63	1,967
	2023년	-	2,657	-	354	-	3,011
예상	2024년		1,200		51		1,251
합계		4,821	3,857	2,862 ²⁾	2,842	7,683 ¹⁾	6,699

주 1.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실적 기준시 8,052억원(4,821억원 + 3,231억원)

2. 협력업체 총 대출금액(공급실적)은 3,231억원이나, 기간기금이 SPV를 통해 2,862억원 만큼 대출채권 양수(약 90%)

자료: 한국산업은행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인 2025년 12월 말까지 상환되어야 하는 2,100억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은 2024년 회수된 기간산업기업 대출액 1,200억원과 2025년 6월말 콜옵션 행사를 통해

조기상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구전환사채 964억 원으로 전액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을 2025년 12월말로 정하면서, 기금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의 청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자산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이전의 입법례¹⁾에 따라 ① 기금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 운용 관련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도록 하고, ② 기금운용기간 종료일까지 기금 채권 및 차입금 원리금의 상환을 완료하도록 하며, ③ 잔여재산²⁾을 기금 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되, ④ 종료일 전에 추정 잔여재산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1) 【참고자료】 정부보증채권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청산 관련 부칙 입법례 참조

2) 참고: '24.6월말 현재 결산 현황(연결기준)

- 자산 2,707억원
 - 현금 및 예치금 598억원
 - 유가증권 913억원 / 대출채권 1,170억원
 - 기타자산 26억원
- 부채 2,110억원
 - 사채(기안채) 2,100억원
 - 당기법인세부채 8억원
 - 기타부채 2억원

<개정안 비교표>

구 분	이헌승의원안	유동수의의원안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 권리·의무	국가 승계	-
채권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	기금운용기간 종료일까지 상환 완료
잔여재산 국고귀속	기금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기금운용기간 종료 전 추정 잔여재산의 일부 국고 귀속 가능
시행령 위임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	

【참고자료】 정부보증채권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청산 관련 부칙 입법례

기금명	법률명	기금 청산 관련 규정
부실채권 정리기금	자산관리 공사법	부칙<법률 제5371호, 1997.8.22.>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⑤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 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 을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 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 라 <u>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u> 다만, 금융위원 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u>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u>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정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시기·절차 및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제3조 (기금의 잔여재산의 처리) ① 법 부칙 제2조제5항 본문 에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이란 법 제39조제1 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 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에 따른 출연 등을 한 자(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가 기 금 운용기간 중에 출연한 출연금 등의 총액 비율로 잔여재 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금의 잔여재산은 기금출연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 한다. 다만, 출연기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반환할 수 있다. ③공사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 전에 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잔여재산을 반환한 후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부칙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기금 잔여재산의 일부를 기금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 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기금명	법률명	기금 청산 관련 규정
구조조정 기금	자산관리 공사법	부칙 <법률 제9670호, 2009. 5. 13.>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등)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자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자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시기·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1512호, 2009.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9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 처리) ①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사는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미리 구조조정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은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기금명	법률명	기금 청산 관련 규정
예금보호 기금채권 상환기금	예금자 보호법	부칙 <법률 제6807호, 2002.12.26.>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u>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u>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u>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u>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u>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u>
금융안정 기금	금융산업 구조개선 법	부칙 <법률 제9741호, 2009. 5.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5. 2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기업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4. 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문 의 처

02)6788-5104